

#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6. 5. 23.

발 의 자 : 강중구의원의외 5명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,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제명을 함축성 있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
- 나.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함  
(안 제2조 내지 제4조)
- 다. 의원의 공무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정함  
(안 제5조 내지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2조(법률 제7670호, 2005. 8. 4공포, 2006. 1. 1.시행)  
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(대통령령 제19322호, 2006. 2. 8 공포)
- 근거자료 :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등 결정 통보  
(2006. 4. 20.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연25,315,000원으로 결정)

## 4. 본 문

-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의정활동비)** 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

**제3조(월정수당)**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

**제4조(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지급기준)** ①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1에 의한 금액
2. 월정수당 : 별표 2에 의한 금액

②의정활동비·월정수당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**제5조(여비)**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**제6조(여비의 종류)** ①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로 구분한다.

②의원이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(철도운임, 선박운임, 항공운임, 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비, 식비,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

**제7조(여비 지급기준)** ①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②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**제8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고성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**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(제4조제1항제1호 관련)**

의 정 활 동 비	
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	보 조 활 동 비
월 900,000원	월 200,000원

[별표 2]

**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4조제1항제2호 관련)**

구 분	지 급 액
월정수당	월 1,009,000원

[별표 3]

**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7조제1항 관련)**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일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지급액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

비고 :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정액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[별표 4]

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7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등급	일비	숙박비	식비	준비금		
							15일 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
의 장 부의장	1등 정액	실비액	가	35	166	107	140	170	195
			나	35	120	78			
			다	35	92	58			
			라	35	79	49			
의 원	2등 정액	실비액	가	30	145	81	130	155	180
			나	30	95	59			
			다	30	70	44			
			라	30	62	37			

비고 ;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.